
「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 구축사업
전기전자업종 기술수요조사」

과업지시서

2023년 10월

— 목 차 —

1	과업개요	1
1.	과업명	1
2.	과업기간	1
3.	소요예산	1
4.	과업목적 및 필요성	2
2	과업 세부내용	2
1.	표본설계 및 대상확정	2
2.	설문조사	2
3.	조사결과 통계처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	3
3	과업 수행지침	4
1.	일반사항	4
2.	계약위반에 대한 조치	5
3.	보안사항	6
4.	과업의 변경조건	7
5.	성과품의 소유	8
4	과업일정 및 성과품 제출	9
1.	과업의 보고	9
2.	추진일정	9
2.	성과품 제출	9

1 과업개요

1. 과업명 : 2023년도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사업 전기전자업종 기술수요조사

2. 과업기간 : 착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

3. 소요예산 : 12,000,000(부가세 포함)이내

4. 과업목적 및 필요성

○ 본 과업은 현재 수행중인 『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』을 위해 전기전자업종 관련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원 서비스 품목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차년도 시행되는 전기전자업종 패키지서비스 품목을 발굴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.

○ 본 과업은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가짐

- 전기전자업종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지원 및 장비에 대한 활용 수요 품목을 파악하고자 함
- 현장의 요구사항 및 패키지서비스 품목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조사, 분석하여 객관적인 필요성/당위성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함
- 기 구축된 전기전자업종 관련 연구기반센터의 장비활용을 촉진시키고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

2 과업 세부내용

1. 표본설계 및 대상확정

- 전국 전기전자업종 중소·중견기업 표본설계
- 기업 일반현황(업종, 소재지, 직원수, 매출액, 주력제품 등) 데이터
- 전기전자업종 세부 품목(전기전자소자부품제품, 광레이저, 반도체·디스플레이, 이차전자·에너지, 디지털제조) 데이터
- 시급지원 공정단계 데이터
- 기업 애로 및 지원요구사항

2. 설문조사

- 조사명 : 2023년도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전기전자업종 서비스 품목 기술수요조사
- 조사대상 : 전국 전기전자업종 중소·중견기업
- 주요내용 :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기업지원 서비스 및 연구 장비에 대한 활용 수요 품목 발굴
- 조사방법 : 대상기업별 담당자 대상 온라인 기반으로 한 전화조사 및 개별 면접 실시
- 조사 표본 수 : 총 180샘플 완료 예정

< 주요 조사내용 >

구분	내용
기업 일반현황	소재지, 유형, 직원수, 매출액, 주력제품 등
업종 세부품목	전기전자소자부품제품(전기전자부품/소형가전), 광레이저(조명/레이저), 반도체디스플레이(반도체/디스플레이), 이차전지에너지(이차전지/에너지), 디지털제조
지원 공정단계	설계, 시제품제작, 시험/평가/신뢰성, 인증, 사업화
애로사항 및 지원요구사항	조언 및 의견

3. 조사결과 통계처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

- (결과검증) 설문 통계처리 후 통계 신뢰도 확보를 위해 결과물에 대한 검증 실시(이상치 확인, 문항 간 논리성 등)
- (결과보고) 기업현황, 전기전자업종 세부품목, 공정단계, 요구사항 등 분석 및 결과보고

3 과업 수행지침

1. 일반사항

- 본 과업지시서는 「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전기전자업종 기술수요조사」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,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.
-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해석에 이견차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.
- 경미한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.
- 최종성과품은 사전에 제출하여 발주처의 검토를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하고, 모든 과업은 발주처의 검사를 득하여야 완료된 것으로 본다.
- 용역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, 과업총괄책임자의 책임하에 과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본 과업의 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, 과업참여자나 대리인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는 교체를 명할 수 있고 용역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. 또한, 용역수행자가 과업참여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본 과업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

착수계, 과업수행계획서, 예정공정표, 보안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
-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사고 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와 제3자의 권리(특허권 등)를 사용하였을 경우 용역수행자가 그에 따른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.
- 과업수행 기간 중 법정 절차 이외에 내실 있는 계획수립을 위하여 실무자회의,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고 다양한 주민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제기된 모든 의견은 검토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- 용역수행자는 회의 등의 개최 시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처에 미리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하도록 한다.
- 본 과업은 제출된 예정 공정표대로 수행하여야 하며, 공정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여야 한다.

2.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

- 다음 각 사항이 발행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용역수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 -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았거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하였을 경우
 -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었거나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

- 과업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거나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성과에 만족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
-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
- 과업참여 시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
- 기타 계약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는 경우

3. 보안사항

- 용역수행자는 정부의 “보안업무규정” 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, 인수를 철저히 하고 발주처와 상의 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.
- 용역수행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.
-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말아야 하며, 외부유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원지, 파지,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.
- 타인의 권리침해, 보안상 결함 및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민·형

사상 책임과 도의적 책임 등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져야 한다.

4. 과업의 변경 조건

- 용역비는 과업수행 결과 과업물량의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변경 할 수 있다.
- 용역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다음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변경과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
 - 천재지변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
 - 과업수행기간 중 관계법령·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및 상위계획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면적, 범위 및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 - 정부 및 발주처의 정책변화, 과업량의 증감 발생, 계획의 변경 등 기타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사항
- 위항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,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 후라도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, 행정절차 이행요인이 발견될 시는 준공을 하더라도 대금지급을 일부 유보할 수 있다.
-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관계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5. 성과품의 소유

-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소유로 하고, 우리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, 본 과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우리원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.
-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소유로 하며, 수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.
-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.

4 과업 일정 및 성과품 제출

1. 과업의 보고

○ 본 과업 추진 중에 생산된 산출물, 데이터는 용역일정에 맞춰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하며, 보고 시기 및 횟수, 보고 방법은 발주처와 협의하에 변동 가능함

- 보고는 상호협의 하에, 서면보고로 변경할 수 있음

2. 추진일정

추진내역	추진일정(주)						비고
	1	2	3	4	5	6	
표본설계 및 내용·대상확정	■						
온라인폼 설계		■					
기업설문조사			■	■	■	■	
자료처리 및 분석			■	■	■	■	
성과품 작성					■	■	

3. 성과품 제출

○ 제출시기 : 기업조사 결과 성과품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, 사전에 데이터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협의후 제출

○ 제출내용 : 최종보고서 1부, 엑셀자료(조사결과 및 단계별 수집, 분석자료 DB) 1부